

4.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 誘致促進法中改正法律(案)立法豫告

財政經濟院公告 第1997-16號 1997. 3. 6

주 요 골 자

- 가. 민자유치 제2종시설에 국제회의시설을 추가하여 ASEM 등 국제회의에 필요한 시설확충을 지원함.
- 나.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개념을 신설하여 동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정부투자기관 수준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다. 민자유치 활성화를 금융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생산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보험사 및 종합금융회사를 추가함.
- 라. 사회간접자본채권 개념정의를 신설하여 민자유치 제1종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마. 민자유치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제안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기본계획에 고시되지 않는 사업의 민간제안이 가능케하는 등 민간제안의 대상범위 및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 바. 현재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8인이내로 명확히 함.
- 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자에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정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 아. 제1종시설사업의 부대사업 허용범위에 복합단지개발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확대하고 부대사업 추진절차도 아울러 보완함.
- 자. 현재의 제도에서는 민간이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조기 완공하더라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인이 없으므로 조기 완공에 대해 적절한 유인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차.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기간확대 및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채권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제1종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토록 함.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유치대상사업 범위의 확대, 민간제안제도의 명확화,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절차, 조기완공장려제도 도입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고 동법 시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임.